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 360~360p (2) 검문소의 운용(법 제18조)	개념, 공식-설명	① 검문소의 설치와 협의 : 시·도 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 를 포함한다),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(법 제18조 제1항).	① 검문소의 설치와 협의 : 시·도 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),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(법 제18조 제1항)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